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

제정 2024년 6월 25일 조례 제2178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운송사업자"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.
 - 2. "운수종사자"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오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으로 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시민·운수종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택시운송 체계 개선과 관련 기반시설 확충 지원
 - 2.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미지 제고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 - 3.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중·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,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추진
 - 4.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)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택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

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

- 2. 운송사업자: 소속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,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 감독,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
- 3. 운수종사자: 관련 법규 준수 및 승객에 대한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택시운송사업의 질적 향상
- 제6조(재정지원) 시장은 운송사업자(그 조합을 포함한다)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1.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·장비의 확충·개선 및 운영사업
 - 2.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 - 3.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
 - 4.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,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
 - 5.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운수종사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 할을 하는 통합콜센터 구축 장비 지원·운영 및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
 - 6. 유수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
 -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7조(관리감독)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1.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, 현 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한다.
 - 2. 운송사업자,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·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 하여야 하며, 고장이나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8조(재정지원 중단 등) 시장은 제6조의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 - 1.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되거나,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
 - 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

- 3.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
- 4.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
- 5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
- 제9조(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)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 - 1.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, 시민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.
 - 2. 시장은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